

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국 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,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등(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)

나.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3조)

다.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(안 제4조)

라. 실태조사와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마. 재정지원(안 제7조)

바.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구축 등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, 전기재해에는 전기 화재, 감전사고, 전기설비사고로 구분됨. 2021년 전기화재의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은 부주의(46.5%)에 이어 두 번째인 22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활동상태(직업)별 감전사고의 경우, 농어민은 17개 직종 중 4.1%로 7번째로 위험성이 높았음¹⁾
-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시 저온창고 또는 건조기 사용, 온실 또는 축사 등에서 전기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, 농어업의 특성상 전기 설비가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요건 때문에 누전 등 감전사고와 화재의 위험도가 높음
- 따라서,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예방하고, 재해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예방 및 지원계획 등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
- **안 제1조 및 안 제2조**는 ‘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’ 하고,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
- **안 제3조**는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)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

1) 한국전기안전공사, 2021 전기재해 통계분석, 제31호, 2022, 20면 및 48면.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(<https://www.kes.go.kr/web/lay1/bbs/S1T110C291/F/101/list.do>)

-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예방 및 지원사업과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으로, 안 제4조 각 호의 안전 점검, 대응매뉴얼 마련과 시설 복구 등은 사업 시행에 필요하고, 조례 제정 취지에도 부합됨
- 안 제6조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농어업인 대상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
- 안 제7조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
-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,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, 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
이것은 시·군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과 한국전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공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
- 충청북도 외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

연번	조례명	시행일
1	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12. 30.
2	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	2021. 5. 20.
3	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	2021. 5. 20.
4	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	2022. 3. 4.
5	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	2022. 9. 22.
6	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 11. 11.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 범위에 속하고,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체계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- 또한, 농어업은 특성상 전기시설 이용이 필수적이지만, 전기시설 사용의 위험도가 높아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